

#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남 창 진 의원

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!

남 창 진 의원입니다.

지난 8월 26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의 발의취지를 말씀 드리면,

현재 의용소방대는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 6조(조직) 및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(조직)에 따라 의용소방대 내에 부장 및 반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

각 소방서별로 부장, 반장에 대한 직위 임명 절차 및 기준이 상이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, 이를 명확히 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본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의용소방대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결속력을 강화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